

光州直轄市西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2年 5月
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2年 5月 6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2年 5月 11日

라. 上程日字 : 第15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(臨時會)

第1次 總務委員會 (92. 5. 15)上程

提案說明. 檢討報告. 質疑答辯

第2次 總務委員會 (92. 5. 16) 議決

2. 提案說明的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總務課長)

가. 提案理由

본 조례는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

- 최근 아파트가 증가하고있는 추세로 아파트지역에 대한 통반의 확정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.

#### 나. 主要骨子

##### ○ 아파트 지역

- 반 : 40 → 60가구
- 통 : 6 → 7개반

15층이상 고층이면서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(棟)은 2개동(棟)으로 1개통을 구성

#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李元昌)

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근거 법규로한 조례중 개정조례 (안)으로서

-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20-30가구로 반을 구성하고 4-6개반으로 통을 구성한다는 규정외에
- 별도 아파트 가구의 통반 규정을 신설 40-60가구로 반을 구성하고 6-7개 반으로 통을 구성하여
- 행정시책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p>○ 아파트지역 통반 구성을 단독주택 지 가구보다 확대조정해도 행정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?</p>	<p>(答辯者 : 總務課長 尹福植)</p> <p>○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비해 밀집하여 거주하므로 행정업무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음</p>

5. 討論要旨 :

6. 審査結果 : 별첨 조례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

7. 少數意見의 要旨 :

8. 其他事項 :

## 통. 반 설치 조례 신 구조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하부조직) <u>행정시책의 원활한</u> <u>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</u> <u>행 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</u> <u>는 반을 둔다.</u></p> <p>제3조 (획정기준) <u>통.반의 획정기준은</u>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 - 2 (생략) (신설)</p> <p>제5조 (통.반장의 위촉)① (생략)</p> <p>② 통.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거 하여 위촉한다.</p> <p>1 - 2 (생략)</p> <p>③ <u>통.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</u> <u>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 (하부조직) <u>행정시책추진의 능률</u> <u>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</u></p> <p>제3조 (획정기준) ① <u>통.반의 획정기준</u> <u>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 -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지</u> <u>역의 통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한</u> <u>다.</u></p> <p>1. <u>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</u> <u>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2. <u>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</u> <u>상의 아파트 동(棟)은 2개 동(棟)</u> <u>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<u>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</u> <u>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 (통.반장의 위촉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통.반장은 ----- -----</p> <p>1 -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임기는 <u>위촉일로부터 2년으로</u> -----</p>